



#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「건축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고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의 개정에 따른 심의대상 추가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,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에 대전광역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함(안 제6조).
- 나.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조정함(안 제7조).
- 다.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제외대상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또는 산업단지내 교육연구시설을 추가함(안 제14조의3).
- 라.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함(안 제32조).

## 3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하고 있던 「건축법 시행령」과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,

##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,

- 안 제6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 15인 이상 50인 이하에서 15인 이상 70인 이하로 위원수를 조정하고, 종전의 건축분쟁조정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는 300세대 미만 건축물의 경우 사업승인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시와 구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시에서 일괄 심의, 사업승인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,
- 안 제14조의3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또는 산업단지에 연구소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또는 산업단지내의 교육연구시설(학원은 제외)에 대한 건축공사시 안전관리에치금 예치대상에서 제외시켰음.
- 또한 안 제32조에서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높이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를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높이와 상관없이 2미터로 띄우도록 하여 건축물의 정형화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켰으며,
- 안 제37조에서는 공개공지등의 확보 대상 건축물 및 공개공지 면적을 정하고, 공개공지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##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,

-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,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강화하고, 다세대주택에 대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였으며, 공개공지등의 확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